

#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36 |
|----------|-----|

제 출 일 : 2025. 1. 24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위탁기간 만료
-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함

### ○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 선정) 및 제19조(재위탁)

## 2. 위탁사무 내용

-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
  -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
-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
  -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주간 프로그램, 돌봄서비스 제공
-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
  -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 기회 제공

### 3. 위탁시설 개요

○ 대상시설 3개소

| 연번 | 구분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| 시설명                     | 면적                     | 정원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
| 1  | 장애인<br>지역사회<br>재활시설 | 경북대로<br>507-1<br>(진접읍) | 남양주시<br>북부장애인복지관        | 3,956.54m <sup>2</sup> | -  |    |
| 2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양주시북부장애인<br>복지관 주간이용센터 | 206.97m <sup>2</sup>   | 24 |    |
| 3  | 장애인<br>직업재활시설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양주시북부장애인<br>복지관 보호작업장  | 201.41m <sup>2</sup>   | 30 |    |

○ 관련사진



### 4. 민간위탁 기간

○ 민간위탁 사업기간 : 2025. 07. 01. ~ 2030. 06. 30.(5년간)

### 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

※ 3개소 모두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내 소재하는 바,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 간 업무 협력 시너지 향상을 위하여 3개소 일괄 수탁기관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

## 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소요예산 : 3,629,923천원(2025년)

(단위 : 천원)

| 시설명                    | 소요액       | 산출근거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          | 2,425,237 | ▷ 인건비 : 종사자 41명 1,946,237천원<br>▷ 관리운영비 : 479,000천원 |
|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<br>주간보호센터 | 623,929   | ▷ 인건비 : 종사자 10명 502,281천원<br>▷ 관리운영비 : 121,648천원   |
|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<br>보호작업장  | 580,757   | ▷ 인건비 : 종사자 9명 522,440천원<br>▷ 관리운영비 : 58,317천원     |

※ 인건비 : 기본급, 4대보험, 명절상여,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, 퇴직적립금 포함

※ 관리운영비 :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 및 수수료, 여비 등

## 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검 토 의 견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다른<br>사무방식으로의<br>수행가능성     | ○ 시 직영 시 전담 상주 인력 필요하지만 행정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직접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 있음. 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필요  |
| 서비스 공급의<br>공공성 및 안정성       | ○ 증가된 지역 내 최중증장애인의 돌봄 수요 해소로 공공성 확보<br>○ 공공의 경우,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시설 이용자와의 탄탄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고,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또는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|
| 경제적 효율성                    | ○ 사업의 연속성뿐만 아니라, 민간분야의 인력과 기존 민간분야 주도로 형성된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여 행정기관의 직접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및 효율성 제고<br>○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시설 운영 재정 확대 가능  |
| 민간의<br>전문지식 및<br>기술 활용 가능성 | ○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축적된 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가능   |
| 성과 측정의<br>용이성              | ○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수행하여 성과 측정이 용이함   |
| 관리 및 운영의<br>투명성            | 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계약체결)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, 동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수탁기관 및 운영방식을 최대한 관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<br>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위탁계약의 해지)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조치 가능 |
| 민간의 서비스<br>공급 시장여건         | ○ 지역 내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,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또는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에 위탁방식 타당  |
| 총 합 의 견                    | ○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법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운영사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|

## 8. 향후계획

- 2025. 03. ~ 04. :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 실시
- 2025. 05. ~ 06. :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
- 2025. 07. ~ : 민간위탁 재위탁 시작

**붙임**

**근거 법령**

#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**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###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**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**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**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###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19조 (재위탁 · 재계약)**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·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, 제4항을 준용한다.

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·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재위탁 ·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.